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2023 개정판

제도 소개 및 확인신청 가이드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고객센터 1566-6487

카카오톡 ID 벤처기업확인위원회

홈페이지 WWW.SMES.GO.KR/VENTUREIN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2023 개정판

제도 소개 및 확인신청 가이드

Contents

Part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8
• 확인유형 및 요건	8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9
• 벤처기업 확인마크	9
• 주요 우대지원제도	10
• 가점대상 지원사업	11

Part 2 벤처기업 확인절차

확인절차도	14
• 신청	14
재확인(연장) 방법	
• 접수 및 납부	15
• 전문평가기관 평가	15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16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확인서 발급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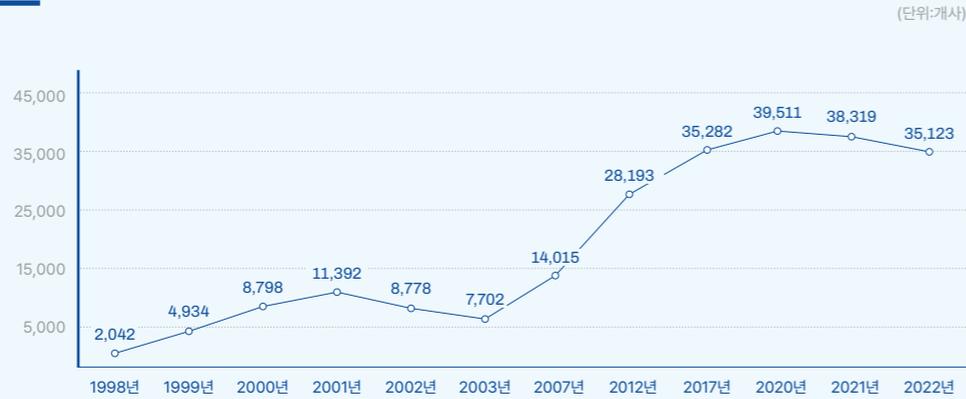
Part 3 유형별 가이드

• 벤처투자유형	20
• 연구개발유형	21
• 혁신성장유형	26
• 예비벤처유형	30

벤처기업 현황 ('22.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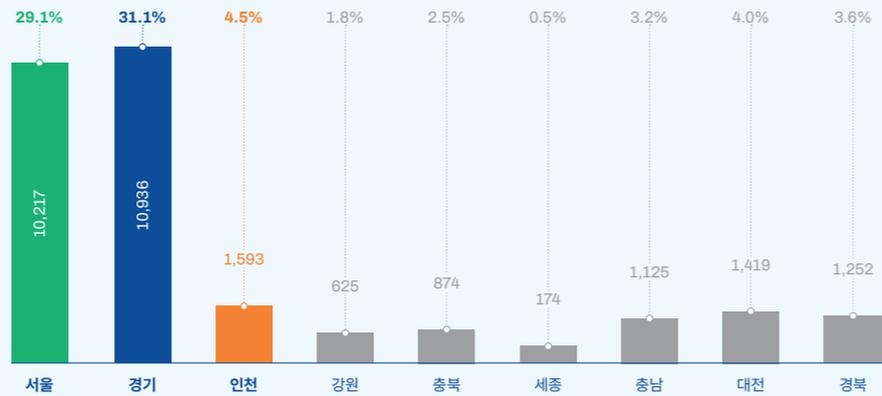
(단위:개사)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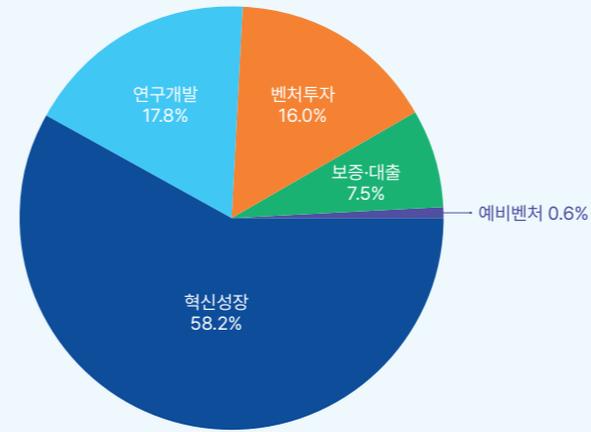


지역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64.7%(22,746개사)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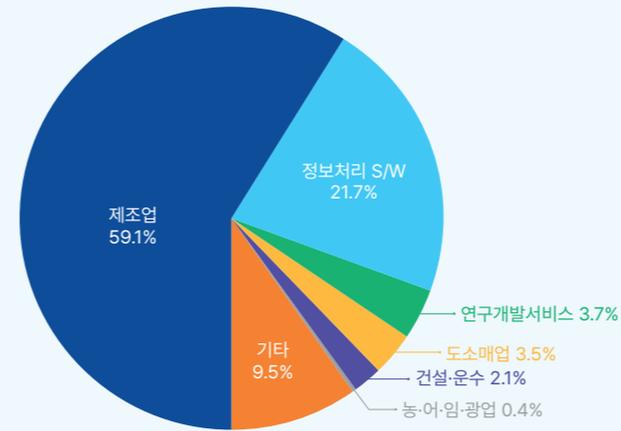


유형별



혁신성장	20,428개 업체(58.2%)
연구개발	6,242개 업체(17.8%)
벤처투자	5,628개 업체(16.0%)
예비벤처	199개 업체(0.6%)
보증·대출	2,626개 업체(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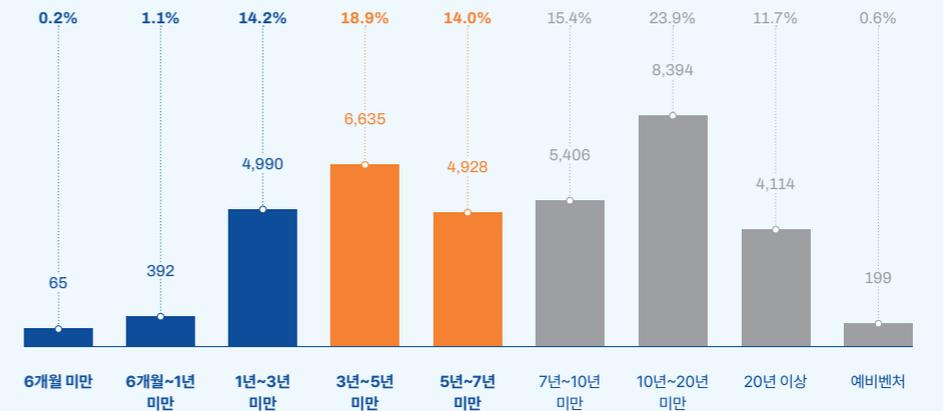
업종별



제조업	20,750개 업체(59.1%)
정보처리 S/W	7,614개 업체(21.7%)
연구개발 서비스	1,295개 업체(3.7%)
도소매업	1,231개 업체(3.5%)
건설·운수	736개 업체(2.1%)
농·어·임·광업	146개 업체(0.4%)
기타	3,351개 업체(9.5%)

업력별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이 15.5%, 창업기업(7년 미만)이 절반을 차지(48.4%)



Part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
- ①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 ② 확인유형 및 요건
 - ③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④ 벤처기업 확인마크
 - ⑤ 주요 우대지원제도
 - ⑥ 가점대상 지원사업
-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을 통한 단일창구로 진행



① 전문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② 위원회
(사전검토)



③ 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확인유형 및 요건

확인유형	기준 요건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단, 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업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적용 제외)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유형별 세부사항은 Part 3 유형별 가이드 참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확인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매주 7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

벤처기업 확인마크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벤처기업을 표현한 비상하는 화살표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높이 도약하는 코리아 벤처기업(K-Venture)을 의미하는 K가 결합된 로고



벤처확인기업은 사용정책에 허용된 조건 하에 '벤처기업 확인마크'의 사용권리를 가짐

- 확인마크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동안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 가능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패 설치 예시



주요 우대지원 제도

분류	지원제도	세부내용
세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벤처기업 상장 심사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M&A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증가세율 면제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증가세율 적용 배제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를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벤처기업 임직원 →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벤처기업: 3명 이상
광고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 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 우대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제도안내] - [우대지원제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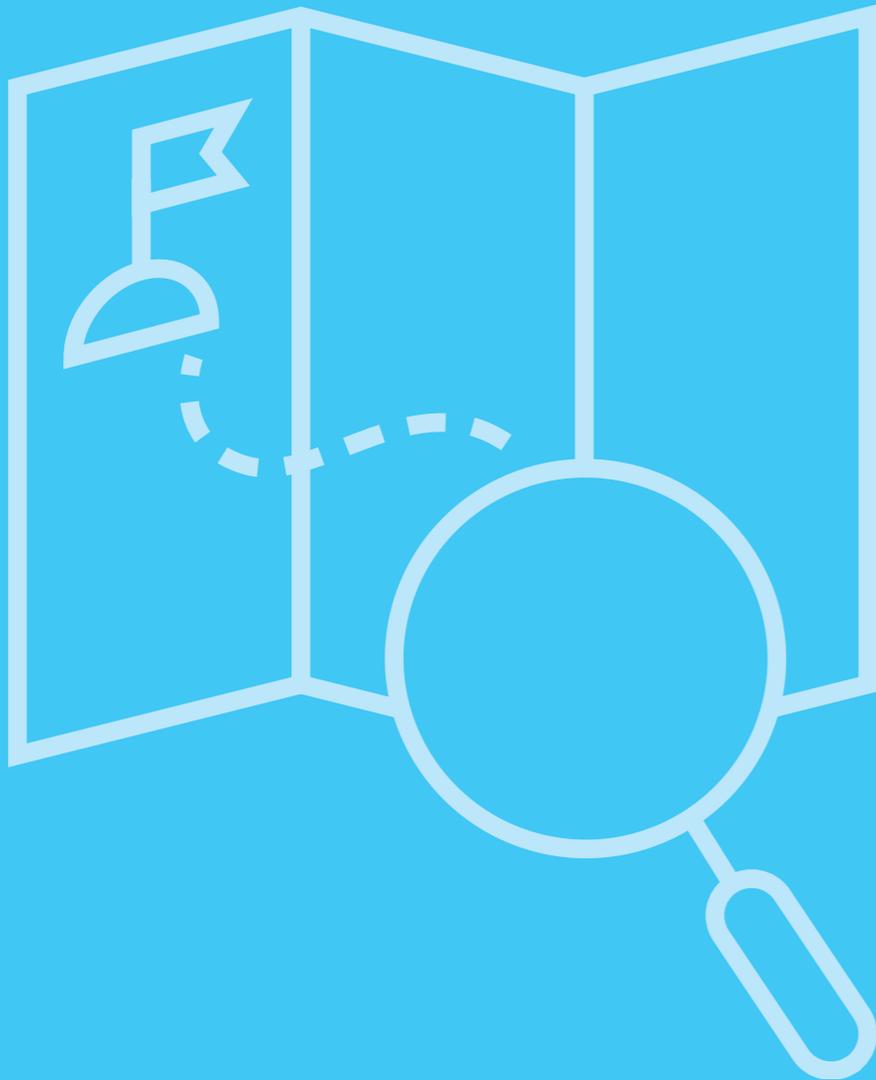
가점대상 지원사업

('22년 12월 말 기준)

분류	사업명	우대사항 및 지원내용
R&D (가점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세부사업 연계지원
	산학연 Collabo R&D 사업	대학 보유자원 활용 중소기업 협력 R&D 지원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 상용화 지원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기능성 원료 개발지원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기획,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R&D 기획 및 R&D사업연계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포스트 규제자유특구연계R&D	사전기획,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스마트 제조(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지원 등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신규 솔루션 개발 등(수행방식에 따라 상이)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기술애로 솔루션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R&D 기획 및 연구개발 지원
	해외인종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해외인종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지원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해외 기술협력국 기술이전 지원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산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등
인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5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4점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벤처기업 가점 1점 공학컨설팅센터 기술전문가 매칭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벤처기업 가점 3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판로/수출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제조/구매 적격심사: 벤처기업 가점 2점 일반응역 적격심사: 벤처기업 가점 1.5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벤처기업 가점 1점 수출바우처 자동선정, 수출금융지원 우대 등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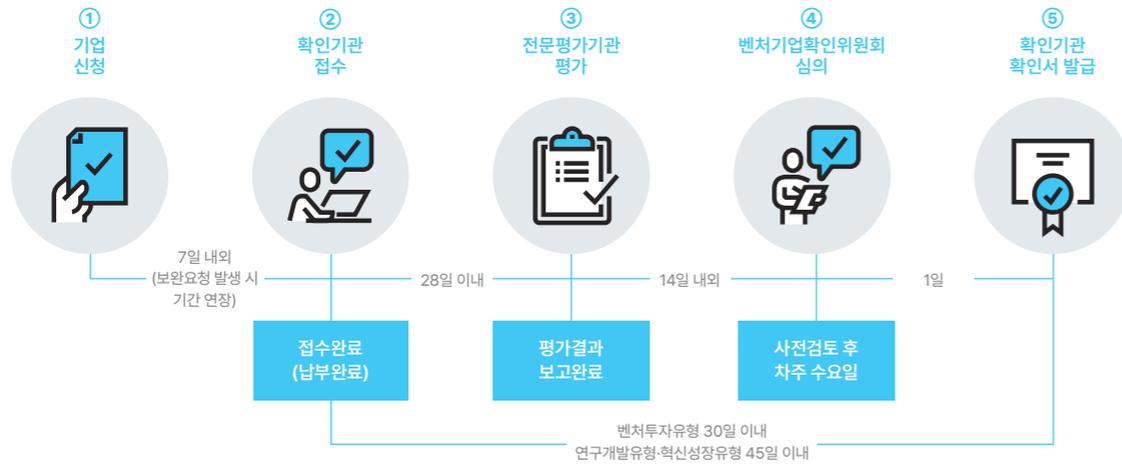
벤처기업 확인절차



-
- ① 신청
 - ② 접수 및 납부
 - ③ 전문평가기관 평가
 -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 ⑤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확인절차도



*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확인유형 선택 : 벤처유형 자가진단 [확인신청]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을 통해 기업에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제출서류 준비 : 선택한 확인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제도안내] - [유형별 안내]에서 다운로드) 미리 준비

① 회원가입	기업정보 입력
② 확인신청	로그인 후 [확인신청]-[확인신청]에서 신청
③ 확인유형 선택	기업에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④ 요건 확인	'벤처기업확인 이후 취소 사유에 대한 고지'를 확인한 후 회사개요 (업종, 자본금, 결산월, 당기 재무제표 확정여부) 작성
⑤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활용 동의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 활용 동의 여부 확인(정보 활용 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 자동연계)
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페이지 상단의 '작성 가이드' 참고 *입력한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수
⑦ 신청첨부파일 업로드	유형별 필요서류를 확인 후 신청첨부파일 업로드(자동연계된 파일은 업로드 불필요)
⑧ 최종 제출	[마이페이지]-[MY벤처현황]에서 진행상태 확인 가능

재확인(연장) 방법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확인(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평가절차로 진행
- 기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여 재확인될 경우, 재확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

접수 및 납부

접수 및 서류검토

- 신청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한 확인수수료 납부 안내

확인수수료 납부 :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확인수수료(기업부담금) 납부 → 접수완료

-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기업담당자 메일)

확인 수수료(VAT포함)

확인유형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벤처투자유형	275,000원	100,000원	175,000원
연구개발유형	495,000원		395,000원
혁신성장유형	605,000원		505,000원
이노비즈 연계	440,000원		34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예비벤처	330,000원		23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예비벤처유형	495,000원		395,000원

*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전문평가기관 평가

확인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확인유형별 업종별·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을 자동배정

확인유형별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확인유형	전문평가기관	평가사항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요건 충족 여부	-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	사업성장성 평가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
예비벤처유형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

*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확인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

최종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등록된 번호를 통해 문자메시지로도 안내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기업이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신청 건당 1회에 한함)
- ① 확인 결과와 함께 통지된 탈락사유를 참고하여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을 통해 이의 신청 사유 및 추가자료 제출
-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재심의의결
- ③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벤처투자유형 2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30일 이내 통보

확인서 발급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유효기간 내 1회 한정)

-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Part 3

유형별 가이드



① 벤처투자유형

③ 혁신성장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④ 예비벤처유형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요건

-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소기업은행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한국벤처투자	외국투자회사	일반은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전문개인투자자 (전문엔젤)	신용보증기금*	클라우드펀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투자'의 정의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서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 전환사채(CB)*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 * 채권 잔액만큼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식으로 전환 시 전환 단가를 상호 간 미리 합의하여 반영한 투자 계약서와 연 0% 이자율에 만기가 있는 채권으로 증빙
-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고용현황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투자유치현황	투자유형, 투자기관,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투자유치 금액 등

제출서류

	제출서류	자동연계	체크사항
1	중소기업확인서	○	-
2	사업자등록증	○	-
3	법인등기부등본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 예정 또는 확정 최근 신고분(세무서 제출분)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5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 자료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 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서류(주주명부, 통장잔고확인서 등)는 전문평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별도 요청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요건

-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업연구소 / 기업창업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③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제외>	7%	5%	5%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 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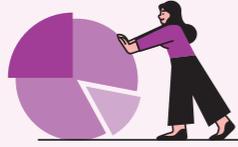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신규 신청기업		재확인 신청기업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이상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 수 증감 추세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20%	20%	1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50%	40%	30%
		협업 실적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 평가	10%	10%	1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20%	20%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재무(매출,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연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 사업진행(바이오의약품) 성과 추세 평가 (2개 지표 선택평가)	-	-	20%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재무 및 고용현황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사자 수 등
6개월 이내 이노비즈 확인 여부	유효시작일자, 발급번호
예비벤처 확인 여부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제출서류

제출서류	자동연계	체크사항	
<기본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	-
2	사업자등록증	○	-
3	법인등기부등본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이 속하지 않는 직전 4개 분기 자료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5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 자료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6	매출원장	X	신청일이 속하지 않는 직전 4개 분기 자료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X	최근 3개년 자료(연도별 12월 말일 자 기준)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X	전직원 명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9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X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발급 : www.koita.or.kr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발급 : www.kocca.or.kr
10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X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변경신고내역 포함)
11	인건비 산정내역서	X	연구개발비 인건비
12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X	인건비 외 모든 연구개발비용
<추가 서류(일부 필수)>			
1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대표자정보' 기재 시 필수)	대표자 경력증명 서류(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택1	
2	주주명부	법인사업자는 필수 제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3	자체기술개발 증빙서류	- 조직도 및 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 급여대장 또는 인건비 원장(인건비 산정내역서 작성 시 필수 제출) - 임차(리스, 렌탈 등) 계약서 - 매입장(매입세금계산서) - 개발계획서 - 개발비 원장 - 개발비 이체내역(통장송금내역/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중 택1)	
4	위탁/공동기술개발 증빙서류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자문계약,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 개발비 원장 - 인건비 원장 - 매입장(매입세금계산서) - 위탁개발비 이체내역(통장송금내역/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중 택1)	
5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교육과정 안내 관련 공문 - 교육이수 증빙 및 교육비 지출내역 - 매입장(매입세금계산서) - 인력개발 관련 집행내역(통장송금내역/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중 택1)	
6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성과로 수출성과 선택 시 제출	



1.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과 BM(비즈니스 모델)

기술(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작성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



3. 경쟁사 분석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최대 3개사)의 특징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



4.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점유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5. 자금운용 계획

창업 후 소요된 자금의 규모(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기준)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6. 팀 구성

대표자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등 작성



7. 기술개발 실적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실적 작성



8.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및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등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작성하며,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추가된 지식재산권만 추가하여 작성



9. 외부 협업 실적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나, 제휴 목적의 비밀유지협약(NDA), MOU 등 실적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신규 추가된 건만 작성



10.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GTV), 의약품 개발단계(바이오의약품만 해당) 성과 중 신청기업에서 2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최근 3년간 실적 작성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요건

-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신규 신청기업		재확인 신청 기업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이상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전담 연구조직 보유형태, 기술개발 전담 인력 비율,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	30%	20%	20%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	20%	1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종합 평가	30%	20%	10%
		R&D 실적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R&D 실적 평가	10%	10%	2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20%	20%	3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	10%	10%	1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 수 증감 추세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성장성 등 종합 평가	20%	20%	1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50%	40%	30%
		협업 실적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 평가	10%	10%	1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20%	20%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재무(매출,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연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 사업진행(바이오-의약품) 성과 추세 평가 (2개 지표 선택평가)	-	-	20%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기업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재무 및 고용현황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사자 수 등
6개월 이내 이노비즈 확인 여부	유효시작일자, 발급번호
예비벤처 확인 여부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제출서류

제출서류	자동연계	체크사항	
<기본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	-
2	사업자등록증	○	-
3	법인등기부등본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3개년 자료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5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 자료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X	최근 3개년 자료(연도별 12월 말일 자 기준) -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X	전직원명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추가 서류(일부 필수)>			
1	대표자 관련 증명서류 (‘대표자정보’ 기재 시 필수)		대표자 경력증명 서류(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택1
2	주주명부		법인사업자는 필수 제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3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시 필수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4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로 인정받고자 할 시 제출
5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성과로 수출성과 선택 시 제출



1.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기술(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불편함)과 해결 필요성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제품/서비스)의 기술적 개선(고도화) 현황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작성



2.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제품/서비스) 소개

'1. 기술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작성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보유 기술(제품/서비스)의 우수성, 차이점, 특징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정(추진 경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기술(제품/서비스)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



5. 경쟁사 분석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최대 3개사)의 특징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



6.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점유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7. 자금운용 계획

창업 후 소요된 자금의 규모(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기준)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8. 팀 구성

대표자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연구개발조직 및 기술개발인력 현황 등 작성



9. 연구개발비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된 신청일 기준 당기 연구개발비 합계액 작성



10. 기술개발 실적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의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실적 작성



1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및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등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작성하며,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추가된 지식재산권만 추가하여 작성



12. 외부 협업 실적

'3.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에서 작성한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나, 제휴 목적의 비밀유지협약(NDA), MOU 등 실적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신규 추가된 건만 작성



13.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월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GTV), 의약품 개발단계(바이오의약품만 해당) 성과 중 신청기업에서 2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최근 3년간 실적 작성

예비벤처유형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항의 2호의 다목

요건

-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비율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청인(대표)의 기술개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수상, 연구실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창업교육 수료 실적 등을 평가	2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4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4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4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4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신청정보

항목	세부항목
예비 창업자 정보	-
신청 책임자	-

제출서류

제출서류	체크사항
<추가서류(일부 필수)>	
1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대표자정보' 기재 시 필수)	대표자 경력증명 서류(동종업계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택1
2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최근 3년 이내 입상한 창업경진대회 상장, 상패 또는 입상확인서 등
3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4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류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교육 수료증 또는 인턴 수료증

사업계획서



1.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기술(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불편함)과 해결 필요성 작성



2.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제품/서비스) 소개

'1. 기술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작성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서비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3.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향후 기술개발을 위한 3년간의 목표와 R&D, 상용화, 인증,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



5. 경쟁사 분석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최대 3개사)의 특징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



6.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4.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사업화 목표시장 진입에 대한 현재 시점의 목표 달성 수준을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마케팅 계획, 시장진출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7. 자금운용 계획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창업 등에 소요가 예상되는 자금규모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8. 팀 구성

신청인(대표)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창업교육 및 인턴 참여 이력 등 작성(창업팀으로 신청 시 창업팀 구성원 현황 추가 작성)



9. 기술개발 실적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학술논문(자체연구), 기타 창업교육 실적 작성



10.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주력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을 지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기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작성